NAVER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NAVER Fair Trade Compliance Program Regulations

문서 정보

문서 정보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담당부서

Compliance

문서 히스토리

버전	일자	이력사항	작성	검토	승인
1	2022. 4.	신규 제정	김태우	자율준수관리자 김지식	대표이사 최수연
2	2024. 11.	개정	김태우	자율준수관리자 김지식	대표이사 최수연
3	2025. 12.	개정	김태우, 오성영	자율준수관리자 김지식	대표이사 최수연
4	2026. 10.	개정	김태우, 오성영	자율준수관리자 김지식	대표이사 최수연

저작권

ⓒ NAVER Corp. All Rights Reserved.

이 문서는 네이버㈜의 지적 자산이므로 네이버㈜의 승인 없이 이 문서를 다른 용도로 임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네이버㈜는 이 문서에 수록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사용이나 사용 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네이버㈜는 이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관련 URL 정보를 포함하여 이 문서에서 언급한 특정 소프트웨어 상품이나 제품은 해당 소유자의 저작권법을 따르며, 해당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네이버㈜는 이 문서의 내용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 1 조 (목적) 5
제 2 조 (기본 원칙) 5
제 3 조 (용어 정의) 5
제 3 조의 2 (규정의 제·개정) 6
제 4 조 (최고경영자의 의무) 7
제 5 조 (최고경영자의 권한) 7
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8
제 7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8
제 8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9
제 9 조 (컴플라이언스부서의 업무) 9
제 10 조 (자율준수관리자 및 컴플라이언스부서의 독립성) 10
제 11 조 (임직원의 의무) 10
제 12 조 (사전업무협의) 10
제 13 조 (내부고발) 11
제 14 조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12
제 15 조 (자율준수편람) 12
제 16 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 12
제 17 조 (내부감시체계) 14
제 18 조 (위험성 평가) 15
제 19 조 (사전업무협의제도) 15
제 20 조 (내부고발시스템) 16
제 21 조 (법 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17
제 22 조 (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18
제 23 조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18
제 24 조 (효과성 평가의 활용 등) 20
제 25 조 (문서관리) 20
제 26 조 (세부 기준의 제정) 21

제1장 일반원칙

제 1 조 (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이하 "**CP규정**"이라 한다)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라 한다)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네이버의 준법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 원칙)

CP규정은 네이버 소속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공정거래 준수와 관련하여 CP규정에 반하는 네이버의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CP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 정의)

CP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어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시스템을 의미한다.
2.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기준 등을 의미한다.
4.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네이버의 이사회를 의미하며, 자율준수관리자의 보고를 받고, CP 운영에 관한 심의, 의사결정 및 필요한 조치의 통지를 수행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네이버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 최고경영자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임명한다.
6. 컴플라이언스부서는 CP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7. 쟁점부서는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관련 쟁점이 많은 부서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8. 임직원은 고용이나 위임 등 계약의 형태나 종류와 무관하게 네이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원과 직원을 의미한다.
9. 제재 조치는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CP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로서,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10.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각 서비스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서비스별 공정거래 리스크 유형 및 유형별 서비스 운영 기준과 절차, 사례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의미한다.
11. 사전업무협의제도는 네이버의 임직원이 CP의 수립·운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등을 위하여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사전업무협의체와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 출시점검, LAWQ(법무검토), nPIMS (개인정보보호 점검), IPMS(지적재산권 점검), AIDA(데이터 거버넌스 점검) 등 일체의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12. 인센티브는 CP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네이버, 고객, 협력사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제공하는 혜택을 의미한다.

제 3 조의 2 (규정의 제·개정)

① CP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제안하고, 최고경영자가 승인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검토하여 CP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경영자에게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제안한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CP규정의 개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받아 개정할 수 있다.

1.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또는 법령명의 형식적 변경
2. 오탈자의 수정
3.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4. 그 밖에 규정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개정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CP규정의 개정 시에는 개정 내용을 지체 없이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권한

제 4 조 (최고경영자의 의무)

① 최고경영자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가 네이버 운영의 핵심 정책임을 선언, 보장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컴플라이언스부서에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최고경영자의 권한)

① 최고경영자는 CP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CP의 운영과 관련하여 네이버를 대표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④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등

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최고경영자와 이사회는 각각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지식이 풍부하거나 CP를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추천 및 임명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쟁점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제 7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 운영 총괄 및 컴플라이언스부서에 대한 관련 사항 지시권한
2. CP 운영 관련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권한
3. 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한
4. 제3호에 따른 점검 및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
5. 제4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이사회 회부 요구 권한

6. 기타 CP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으로서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제 8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P 실천목표 및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
2.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3.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4.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5. CP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7. 사전업무협의제도 및 협의체 점검 및 운영 참여
8.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CP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9. 제8호에 따른 점검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 진행 요구
10. CP 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의 선정
11. 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 연도 CP 실천 목표, 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경영계획에의 반영
12.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의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

제 9 조 (컴플라이언스부서의 업무)

① 컴플라이언스부서 소속 직원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②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네이버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③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최고경영자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네이버의 CP운영 현황 및 성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자율준수관리자 및 컴플라이언스부서의 독립성)

① 네이버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컴플라이언스부서 소속 임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지시 또는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CP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보고할 권한을 갖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경영자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에는 네이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 및 컴플라이언스부서 소속 임직원은 CP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부당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⑤ 네이버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컴플라이언스부서 소속 임직원이 CP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즉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

제 11 조 (임직원의 의무)

CP와 관련한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사전업무협의제도 등 네이버의 공정거래 관련 프로세스의 준수
2. 이용자 및 파트너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노력
3.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수행 중 확인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제보
4.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CP 관련 교육 목표 달성, 자율준수편람에 대한 숙지

제 12 조 (사전업무협의)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컴플라이언스부서 또는 법무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자와의 계약,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 기획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신청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②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 시 법무업무 협의시스템(LAWQ 등 사내 시스템), 전자메일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 전에 협의 대상 업무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컴플라이언스부서에 상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서비스출시점검 프로세스에 등록하여 통합 점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전업무협의제도 및 협의체의 활동 및 운영을 점검·관리하고 이에 참여하며 필요시 최고경영자 등에 보고한다.

제 13 조 (내부고발)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임직원의 그러한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제20조에서 정하는 내부고발시스템에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제보하지 않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 위반 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3장 CP의 운영 등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제 14 조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① 최고경영자는 네이버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최고경영자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

제 15 조 (자율준수편람)

①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포하는 경우 쟁점부서에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③ 컴플라이언스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율준수편람의 개정 필요성을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P 관련 연간 교육 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취지 및 목적
2. 교육 대상자 및 부서
3. 교육 전담강사의 지정 및 역할 정의
4. 교육내용 및 교재 활용 방안

5. 교육의 방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구분 등)
6. 교육성과 평가 방법 및 후속조치 방안
7. 연간 교육일정
8. 이전 교육의 효과성 평가 결과
9. 임직원 VOC
10.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필수 법규 및 개정사항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쟁점이 많은 쟁점부서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컴플라이언스부서는 CP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네이버의 교육 지원부서에 협의 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지원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컴플라이언스부서의 요청에 응한다.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시행 이후 반기별로 교육 미이수자 및 법 위반 임직원을 확인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이수를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임직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또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⑦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교육 성과가 저조한 임직원을 선정하여 보강 교육을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임직원들의 이해수준, 교육 만족도 등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실제로 충실히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수행 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CP 교육계획에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2. 교육 강사가 사전에 정해진 선정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교육이 실행되었는지 여부
3. 교육 내용에 임직원 의견(VOC), 공정거래법 및 필수 법규의 개정사항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4.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이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그 실행 결과가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는지 여부
5. 그 밖에 CP 교육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 실제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⑩ 자율준수관리자는 제9항의 실적을 분석하여 교육 실행의 충실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⑪ CP 관련 교육에 대하여 CP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컴플라이언스부서가 시행한다.

제3절 내부감시체계

제 17 조 (내부감시체계)

① 네이버는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2. 사전업무협의제도
3. 직접보고체계
4. 내부고발시스템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결과를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위험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부서를 통하여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쟁점사항 사실 확인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 평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비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관리자와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 회차 및 기간
2. 시행의 주체(자율준수관리자, 컴플라이언스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
3. 평가 대상 부서(선정기준 포함)
4. 평가 결과(사업부서별, 임직원별 등)
5. 미비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방안

제 19 조 (사전업무협의제도)

① 자율준수관리자 및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업무협의 실적은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컴플라이언스부서 또는 법무팀 기타 사전업무협의체는 제12조에 의하여 요청받은 사전업무협의사항에 대하여 적법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의뢰받은 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메일 등을 활용해 먼저 회신할 수 있다.

제 20 조 (내부고발시스템)

① 네이버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② 공정거래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내부고발이 있는 경우, 내부조사부서는 내부조사·점검 규정 등에 따라 감사·조사를 수행하되, 컴플라이언스부서와 협의한다.

③ 누구든지 내부고발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제보자 신원을 공개·누설하거나 이를 유추·색출하는 행위
2. 제보자 신원, 내부신고내용 등 제보 관련 사실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내부조사부서 외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다만, 제보사실 처리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보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만, 타인을 비방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허위의 제보를 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4.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감사와 관련하여 내부조사부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이를 시도하는 행위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CP규정 제21조에 따라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 관련 위반 사항 관련 제보내용에 대한 내부조사부서 업무 경과 및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내부고발시스템의 운영 경과에 대하여는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CP규정 제22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제재 및 인센티브

제 21 조 (법 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전보 등 제재 절차 진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컴플라이언스부서 또는 법무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하여, 네이버 또는 그 임직원(해당 임직원 포함)이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과징금·고발·기소 등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으로 인하여 네이버에 유무형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기타 제1호에 준하여 그 위법성 및 귀책사유가 중한 경우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 전보 등 제재 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특별교육 이수 등 적절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교육 등 네이버가 운영하는 CP활동 참여를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거부하는 경우
2. 사전협의제도 등 네이버가 운영하는 CP제도를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네이버의 CP 문화 확산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스스로 네이버에 법 위반 사실을 알리면서 증거제공 등 방법으로 사안 해결에 적극 협조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이를 감안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재의 감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네이버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 유형 및 수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동기 및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
2. 문제 행위에 가담한 정도

3. 위반자의 지위 및 직책
4. 문제 행위가 네이버에 미친 영향(손해 포함)의 정도
5. 관련 업무의 특수성
6. 기타 개별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위 각 호에 준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조에 따른 조치 요구 시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담당부서 또는 HR부서와 협의한다.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네이버의 조사·감사 및 인사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조사부서, 징계담당부서 및 HR부서 등과 협의하여 본 조 관련 하위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 22 조 (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용을 통한 네이버의 법 위반 예방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HR부서 또는 징계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는 사규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격려금 등 포상
2. 자율준수관리자 상장 수여
3. 해당연도 인사평가 시 가점
4. CP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제재 시 경감 또는 면제

③ 기타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CP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고 컴플라이언스부서가 시행한다.

제5절 효과성 평가 및 경영 반영

제 23 조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제시한 실천 목표에 따라 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CP 운영 관련 효과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CP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CP 효과성 평가를 시행한다.

1. CP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CP 운영 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성과
4. CP 관련 교육성과
5. 법 위반 행위의 발생 빈도 및 네이버에 미친 영향
6. 컴플라이언스부서의 CP 업무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7. CP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 운영 관련 기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8. 컴플라이언스부서 소관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 집단에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효과성 평가 및 이에 수반되는 감사(이하 “CP 효과성 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이하 “수행원”이라 한다)의 자격·역량 및 이해상충 회피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 분야의 전공 또는 실무 경험, 감사 업무 수행 경험, 관련 외부 자격(변호사, ISO 37301 인증심사원 등) 보유 여부 등 수행원의 자격 요건
2. 수행원 자신이 소속된 부서, 담당 서비스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평가 수행을 배제하는 이해상충 회피 요건

⑤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수행원이 제4항의 자격 및 이해상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효과성 감사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CP 효과성 감사 계획에는 네이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와 관련 정책의 변경사항, 직전 CP 효과성 감사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제 24 조 (효과성 평가의 활용 등)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규정 제23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 예산과 조직 운영의 변경, CP규정 개정 추진을 결정(이사회의 경우 의결)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CP규정 개정 등 완료 시 그 결과를 임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인사 제재 조치 결과를 징계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 25 조 (문서관리)

① 컴플라이언스부서는 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네이버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CP 관련 자료를 지정된 사내 업무 시스템을 통해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로 게시된 자율준수편람
2. 부서별로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3. 부서별로 외부 거래(업무)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공문 등
4. CP 효과성 감사의 계획서·결과보고서 등 수행 기록
5. 사전업무협의제도 운영 관련 기록

6.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으로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부서가 직접 수신한 문서 일체

③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제2항 제4호에 따른 CP 효과성 감사의 수행 기록을 네이버의 다른 감사 기록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

④ 컴플라이언스부서는 제2항에 따른 문서보관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미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미비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자료 보관기간은 네이버의 정보보호규정 내 사내 문서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 26 조 (세부 기준의 제정)

자율준수관리자는 CP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2. 4. 제정되었다.

본 규정은 2024. 11. 개정되었다.

본 규정은 2025. 12. 개정되었다.

본 규정은 2026. 10. 개정되었다.

네이버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수연